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 안 번 호 4327 제안연월일: 2024. 9.

제 안 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과학관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1045	정부	2024. 6. 27.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 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 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9.4.) 상정
	2201474	권영진의원	2024. 7. 8.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 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 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9.4.) 상정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 9. 4.)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

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9. 9.)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 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나.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지원주체로 명시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는 그"를 "설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 ②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 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 부령으로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u>관람료등의 금액</u> 기준은 해당 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 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 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 학관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 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 을 포함한다)는 관할 구역 안 의 공립과학관 설립 · 운영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u>②</u> · <u>③</u> (생 략)	③·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E 0 /